

# 서울특별시 사유지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(구로구 구로동 하늘도서관)

의안 번호	290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10월 15일  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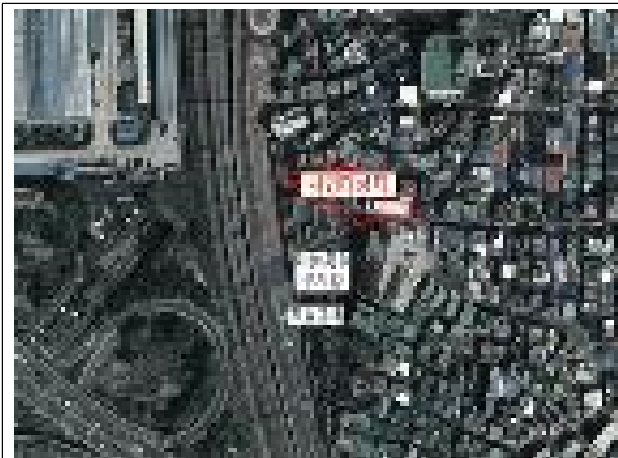
## 1. 제안이유

- 가.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하늘도서관 부지에 노후화된 도서관을 철거하고 구로구 생활SOC 복합화사업인 하늘마루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지원하여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의 주민편익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.
- 나. 신축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설치에 해당되어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9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대상지 현황

- 위 치 :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390-42번지(옛 은일정보고)
- 면 적 : 1,278 $m^2$
- 소 유 : 서울특별시(토지), 구로구(건물)
- 위치도 및 현황사진



위치도



현황도

## 나. 복합문화시설 건립 개요

○ 규 모 : 연면적 1,720 $m^2$  / 지상4층,지하1층

※ 사유지내 구로구 소유의 건물(5층)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임

○ 활용방안 : 도서관, 글로벌자료실, 주민공동체공간, 문화강연실 등

○ 소요예산 : 5,980백만원(국비 2,580, 시비2,580, 구비 820)

## 다. 기대효과

○ 문화인프라가 부족한 구로동 일대에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주민편익 증대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9조

제9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1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(이하 "공용재산"이라 한다)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(이하 "공공용재산"이라 한다)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※ 작성자 :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강영호(☎ 02-2133-2375)